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인

2006년 6 월22일

국무총리 한 명 숙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한 덕 수 장 관

◉대통령령 제1953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 이 한다.

가.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제2조제2항제 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55조에 따른 채

권평가회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유가증권 분석·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평가하려는 유가증권(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것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을 대상으로 발

간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파되는 방송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1회 이 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법 제23조제4호"를 "법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주요내용 등을"을 "주요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로, "그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무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그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신용정보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본인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송료 등 통보하는"을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오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다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는 기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는 기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는 기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는 기관에 되었다.

④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6월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 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 내지 제 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신용평가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의 조회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신용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의 완화(영 제4조의 2제1항제3호가목)
 - (1) 신용평가업자의 허가시에 일률적으로 30인 이상의 신용 평가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진입자에

게 지나친 초기 인력부담을 초래하고, 신용평가업자의 경 쟁을 제한하고 있음.

- (2) 상시고용하여야 하는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30인 이상에 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특정 업종의 유가증권 또는 유동화증권에 신용평가 업무를 특화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으로 완화함.
- (3) 신용평가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신용평가업자들의 전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추가(영 제7조제4호)
- (1)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어음교환소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제외되어 있음.
- (2)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추가함.
- (3)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영 제11조)
- (1)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이용목적 등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방법을 일간 신문 또는 방송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인이 수시로 신용 정보활용체제를 알아보는 것이 불편함.
- (2)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3)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라. 신용정보제공내역 조회 관련 절차의 개선(영 제13조의2제2 항 및 제3항, 영 제1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1)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신용정보제공내역 조회절차만을 정함에 따라 일반인들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조회하기가 불편함.
 -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자, 그 밖에 금융감독위 원회가 지정·고시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자

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3) 신용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증진되고, 신용정보주체의 신 용정보에 대한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대 통 령 노 무 현 ① 2006년 6 월22일

> > 국 무 총 리 한 명 숙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한 덕 수 장 관

◉대통령령 제19537호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

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기준"을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동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시행령 제9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

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10 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조사업무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